

중남미지역

■ 멕,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 2003년 8월 20일기준, 추가 5년 부과

- 멕시코 정부는 12월 10일(금)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제품은 HS CODE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2003년 8월 20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의 경우, 1993년 8월 19일 최종관정으로 3.74%~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5년 후 1998년 12월 21일에 반덤핑관세 존속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 후 1999년 7월 29일에 추가로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바 있음. 다시 5년 이후인 2003년 8월 20일에 경제부에서 덤핑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 갔으며, 지난 2004년 4월 16일에 관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중임을 발표하였음.
- 멕시코업체 중 Polykron S.A. de C.V.사와 Arteva Specialities S. de R.L. de C.V.사가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멕시코 국내업체에 미칠 피해 가능성을 인정,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음.

□ 멕시코 정부의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근거

- 첫째, 최근 중국, 일본, 미국, 인도, EU,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급증하고 있음.
- 둘째, 한국은 국내 내수용보다 수출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용 제품 가격이 멕시코 국내산과 비교시 매우 낮음. 예를 들어, 1999~2001년 기간 중 한국 내수용보다 수출용은 33%나 가격이 저렴했으며, 2002~2003년 상반기까지 29%나 저렴했음. 또한, 한국 제품의 對美, 對캐나다 수출가격은 멕시코 국내산 대비 2001년에 34%, 2002년에는 26%나 저렴했음.
- 셋째, 한국은 보유 생산설비에 비해 현재 가동률이 낮으며, 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공격적인 수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대체 시장에서 덤핑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해제할 경우, 멕시코 국내 시장 가격을 교란시켜 국내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 최종판결로 인해,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1993년 부과시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임.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

분류	반덤핑관세율	설명
A	3.74%	삼양사에서 제조, 수출할 경우
B	14.81%	삼양사제품을 대우에서 수출할 경우
C	4.49%	제일합섬 제품을 삼성에서 수출할 경우
D	32%	A,B,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04년 12월 현재 멕시코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은 섬유제품에 한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대한 수입 규제 현황 >

품명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0	'93.8.19	반덤핑 관세 부과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반덤핑 관세 부과

- 멕시코 정부는 수입업체에서 2003년 10월 14일에 제시한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중 멕시코내에 국내생산이 없는 콘주게이트 단면의 것(conjugated), 로우 멜티드의 것(low melted) 등 일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주장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 미생산 제품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문의처 : 멕시코무역관 김윤희 marisol@kotra.or.kr)